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2022. 7.

국 토 교 통 부

# ||| 목 차 |||

I. 개요 및 기본방향 .....	1
II.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	2
III.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	3
1. 수입계획 .....	3
2. 지출계획 .....	4
3. 추정 대차대조표 .....	7
4. 추정 손익계산서 .....	8
5. 기금운영비 .....	9
IV. 융자조건 .....	10

## 1. 개 요

### □ 설치 근거 및 목적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한다.

- (목 적)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 기금조성 및 운용

- (조성) 용자원리금 회수 등 자체재원과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일반회계 및 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달
- (운용)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주택건설자금 지원,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

## 2. 편성방향

### 편성방향

- ▶ 국민주택 건설 및 저리의 안정적인 주택자금 공급으로 국민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 ▶ 취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 □ 주요특징

-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여, 도시재생·임대주택 리츠 등 다양한 주택도시사업에 지원
-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통해 저소득·서민층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을 포함한 국민·영구·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건설 지원
-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주택자금 융자 지원
- 주택의 질적 향상 및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추진

## Ⅱ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 (자금수입 및 지출계획금액)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자금수입계획 및 자금지출계획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자금수입계획 금액 : 928,892억원
  - 자금지출계획 금액 : 928,892억원
- (운용계획) 2022년도 기금의 조성·운용계획,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융자기준은 별지와 같다.
- (기금운영비의 지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관리비중 위탁수수료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에 대하여는, 각각 위탁수수료 지급 산식상의 업무량 증감 및 대출금 잔액 증감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2022년도에 미지출된 금액은 2023년도에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경기 활성화와 지원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 건설자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의 대출규모와 대출 조건을 시장금리 동향 등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 있다.

### Ⅲ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 1.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계획	비 고
주 택 계 정	[11] 재산수입	3,800,703	
	[52] 정부출자수입	459,049	
	[521] 정부출자수입	459,049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341,654	
	[544] 기타민간이자수입	3,306,194	
	[546] 기타재산이자수입	35,460	
	[12] 경상이전수입	91,819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1,819	
	[593] 법정부담금	10,000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81,819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51,826	
	[69] 잡수입	51,826	
	[691] 기타잡수입	51,826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6,002,245	
	[75] 융자원금회수	16,002,245	
	[75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6,002,245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36,935,644	
	[81] 국공채수입	18,000,000	
	[811] 국공채발행수입	18,000,000	
	[85] 정부예금회수	18,935,644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12,994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7,922,650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5,297,046	
	[91] 전입금	4,828,534	
	[911] 일반회계전입금	4,278,137	
[913] 기금전입금	550,397		
[92] 예탁원금회수	9,402,666		
[923] 기금예탁원금회수	9,402,666		
[94] 예수금	20,740,900		
[946] 기타민간예수금	20,740,900		
[95] 예탁이자수입	324,946		
[953] 기금예탁이자수입	324,946		
소 계(주택계정)		92,179,283	

구 분		2022년 계획	비 고
도 시 계 정	[11] 재산수입	47,996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7,996	
	[544] 기타민간이자수입(도시계정)	47,996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00	
	[69] 잡수입	200	
	[691] 기타잡수입(도시계정)	200	
	[20] 용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51,014	
	[78] 정부출자주식매각대	51,014	
	[781] 정부출자주식매각대	51,014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0,000	
	[85] 정부예금회수	20,000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도시계정)	10,000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도시계정)	10,000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90,663	
	[91] 전입금	590,663	
[915] 계정간전입금(도시계정)	590,663		
소 계(도시계정)		709,873	
합 계		92,889,156	

## 2.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분		2022년 계획	고
주 택 계 정	<b>[1000]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b>	2,592,155	
	[1038] 재건축초과이익자체배분	123	
	[401]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123	
	[1041] 주택신보출연	132,565	
	[40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32,565	
	[1042] 이차보전지원	384,976	
	[401] 이차보전지원	384,976	
	[1071] 이자상환	1,835,400	
	[798]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606,200	
	[799] 국공채이자상환	1,229,200	
	[1076] 수탁은행관리	238,754	
	[600] 위탁수수료	238,754	
	[1077] 기금운영비	337	
	[634] 기타경비(주택)	337	
	<b>[1100] 분양주택등 지원(용자)</b>	265,750	
	[1131] 주거환경개선지원(용자)	9,500	
	[403]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8,500	
[406] 주택성능보강	1,000		
[1134] 분양주택지원(용자)	256,250		
[401] 분양주택(용자)	256,250		

(단위 : 백만원)

분		2022년 계획	고
주 택 계 정	<b>[1200] 구입·전세자금</b>	8,530,000	
	[1231]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8,530,000	
	[401]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8,530,000	
	<b>[1300] 임대주택지원(용자)</b>	15,478,656	
	[1332] 국민임대주택지원(용자)	691,719	
	[401] 국민임대(용자)	691,719	
	[1333] 공공임대주택지원(용자)	1,970,467	
	[401] 공공임대(용자)	233,536	
	[402] 집주인임대주택사업	83,000	
	[404] 민간임대(용자)	1,653,931	
	[1335] 행복주택(용자)	1,508,814	
	[401] 행복주택(용자)	1,508,814	
	[1336] 다가구매입임대(용자)	5,809,250	
	[401] 다가구매입임대(용자)	5,809,250	
	[1337] 전세임대주택지원(용자)	4,532,791	
	[401] 전세임대(용자)	4,532,791	
	[1338] 통합공공임대주택(용자)	965,615	
	[406] 통합공공임대(용자)	965,615	
	<b>[1400] 임대주택지원(출자)</b>	6,659,404	
	[1440] 임대주택지원	6,659,404	
	[40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3,346,700	
	[403] 전세임대경상보조	117,215	
	[404] 국민임대출자	240,161	
	[407] 영구임대출자	246,426	
	[408] 행복주택출자	1,035,258	
	[409] 임대주택리츠출자	335,610	
	[411] 통합공공임대출자	857,477	
[412]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480,557		
<b>[9000] 기금간거래(예탁금)</b>	14,660,860		
[9002] 사학진흥기금예탁(주택도시기금)	83,728		
[900] 사학진흥기금 예탁	83,728		
[9003]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14,577,132		
[91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14,577,132		
<b>[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b>	6,220		
[911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주택도시기금)	6,220		
[911] 공공자금관리기금(용자계정) 예수원금상환	6,220		
<b>[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b>	378		
[9201]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주택도시기금)	378		
[921] 공공자금관리기금(용자계정) 예수이자상환	378		
<b>[9300] 계정간거래(전출금)</b>	590,663		
[9310] 주택계정에서 도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90,663		
[999] 도시계정 전출	590,663		

(단위 : 백만원)

분		2022년 계획	고
	<b>[9700] 여유자금운용</b>	14,106,297	
	[9701] 여유자금운용(주택도시기금)	14,106,297	
	[971] 통화금융기관예치금(주택)	1,056,540	
	[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주택)	13,031,973	
	[973] 기타여유자금운용(주택)	17,784	
	<b>[9800] 차입금 등 원금상환</b>	29,288,900	
	[9850]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주택도시기금)	15,011,900	
	[980]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15,011,900	
	[9860] 국공채원금상환(주택도시기금)	14,277,000	
	[980] 국공채원금상환	14,277,000	
<b>계(주택계정)</b>		92,179,283	
	<b>[1500] 도시재생활성화</b>	664,982	
	[1510] 도시재생지원	197,711	
	[992] 도시재생사업지원	17,594	
	[997] 도시재생지원(융자)	150,117	
	[998] 도시재생지원(출자)	30,000	
	[1520] 도시기능증진	463,112	
	[992]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60,000	
	[994] 수요자중심형재생사업	85,612	
	[995] 가로주택정비사업	267,500	
	[996] 자율주택정비사업	50,000	
	[1530] 위탁관리	4,124	
	[600] 위탁수수료	4,124	
	[1540] 기금운영비	35	
	[634] 기타경비(도시)	35	
	<b>[9700] 여유자금운용</b>	44,891	
	[9701] 여유자금운용	44,891	
	[971] 통화금융기관예치금(도시)	25,381	
	[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도시)	19,510	
	<b>소 계(도시계정)</b>	709,873	
	<b>합 계(주택도시기금)</b>	92,889,156	

### 3.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분		2022 (추정)	비 고
자 산	○ 대출금	138,098,382	
	총대출금	143,742,150	
	(대손충당금)	(5,643,768)	
	○ 예치금	16,178,966	
	○ 투자유가증권	80,533,705	
	○ 미수이자 등	184,312	
합 계		234,995,365	
부 채	○ 국민주택채권	70,777,926	
	○ 청약저축	101,997,979	
	○ 기금예수금	7,199	
	○ 유동성장기부채 등	24,767,024	
	○ 미지급이자 등	2,101,843	
소 계		199,651,971	
자 본	○ 기본순자산	343,000	
	○ 적립금및잉여금	32,541,094	
	○ 순자산조정	2,459,300	
	소 계		35,343,394
합 계		234,995,365	

#### 4.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분		2022 (추정)	비 고
수 익 부 문	○ 사업수익	3,347,756	
	- 대출금 이자	3,021,781	
	- 예치금 이자	325,975	
	○ 사업외 수익	1,484,671	
	- 복권기금수익금	550,397	
	- 기타 영업외수익	934,274	
합 계		4,832,427	
비 용 부 문	○ 차입금 이자	1,835,400	
	○ 기금 운영비	260,844	
	○ 이차보전지원	384,976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32,565	
	○ 대손충당금전입액	913,631	
	○ 사업외비용	1,236,952	
	비 용 계		4,764,368
당기순이익		68,059	
합 계		4,832,427	

## 5. 기금운영비

(단위 : 백만원)

항 목	금 액	비 고
○ 합 계	243,250	
- 위탁 수수료	242,878	- 주택계정 : 238,754백만원 - 도시계정 : 4,124백만원
- 연구 용역비	180	- 주택계정 : 180백만원
- 관서운영비 등	192	- 주택계정 : 157백만원 - 도시계정 : 35백만원

# IV

## 용자조건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분양주택 등 용자)				
▪ 집주인 임대주택 건설·개량형	가구당 수도권 1억, 광역시 0.8억, 기타 0.6억	1.5	1년거치 8년, 10년, 12년, 16년, 20년 상환 (선택시 원금의 65% 원리금분할상환 및 잔여금액 만기 일시상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임대 목적으로 신축 또는 수선하여 LH 등에 임대관리를 위탁) ※ 임대 위탁기간 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 상환시 위약금리 부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의 경우, 대출기한 연장시 당초 대출원금의 5% 이상 상환
▪ 집주인 임대주택 매입형	가구당 수도권 1억, 광역시 0.8억, 기타 0.6억	1.5	8년, 1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LH 등에 임대관리를 위탁) ※ 임대 위탁기간 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 상환시 위약금리 부과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50% 한도
▪ 집주인 임대주택 용자형	가구당 수도권 1억, 광역시 0.8억, 기타 0.6억	1.5	8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초기임대료, 임대료 상승률 제한) - 대출한도는 순담보가격의 70% 이하 - 만기 일시상환은 대출원금의 10% 상환후 2년 단위로 기간연장
▪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	수도권 2.0억 지방 1.5억 (보증금의 80% 이내)	1.3	2년 거치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총 6년)	-안전위험 D, E 등급 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단독· 다세대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 세입자,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의 세입자 · 부부합산 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퇴거주택 제외) 세대주 -지자체 및 LH 등 공공기관(주거 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시행자)
▪ 공공분양주택자금 · 전용면적 60㎡이하  · 60㎡초과~ 85㎡이하	5,500  7,500	3.6 (4.6) [디딤돌 대출금리] 3.8 [디딤돌 대출금리]	· 사업자 : 3 이내 일시상환 (공공주택법 적용 주택의 경우 4년이내 일시상환) ·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조합주택·유입물건 포함 -건축허가 대상사업의 경우 호당한도 : 3천만원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 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 동하되, 미증빙시 연 2.8%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공급 받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 족에게 대환시 연 1.8% 적용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3년거치 17년상환	- 60㎡초과~85㎡이하는 다 음에 한하여 지원 · 공공기관에 한하며, 75㎡초과~ 85㎡이하는 공공주택법 적용 주택에 한하여 지원 -공공기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 조정(제로에너지 건축물 예 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 -( )는 민간적용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형 생활주택</li> <li>· 단지형 다세대, 연립</li> <li>- 전용면적 60㎡이하</li>   <li>- 전용면적 60㎡초과~ 75㎡이하(공공기관)</li> </ul>	7,000  7,000	3.8 [디딤돌 대출금리]  4.0 [디딤돌 대출금리]	3 이내 일시상환	- 기존 분양주택건설기준 준용 -[ ]는 입주자 전환시 금리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 · 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 미증빙시 연 2.8% ·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1%p 우대  - 금리는 2021년 9월 21일부터 1년간 전용면적 60㎡ 이하 착공물량에 한하여 1.5%p 인하('21.11.22. 이 후 납부하는 이자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형 생활주택(원룸)</li> <li>· 14㎡이상~30㎡미만</li> <li>· 30㎡이상~50㎡이하</li> </ul>	m <sup>2</sup> 당 120 m <sup>2</sup> 당 140	4% [디딤돌 대출금리]	3년이내 일시상환	- 용자 한도 : 최저 1,680만원(14㎡), 최고 7,000만원(50㎡)  -[ ]는 입주자 전환시 금리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충 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 되, 미증빙시 연 2.8%단, 원룸 대출기간 20년의 주택을 매각 (분양)하는 경우에는 잔여대출조 건을 유지하여 전환처리 (금리는 대환금리 2.8% 적용)  - 금리는 2021년 9월 21일부터 1년간 착공물량에 한하여 1.5%p 인하( 21.11.22. 이후 납부하는 이자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세대주택자금</li> </ul>	5,000	3.8 [디딤돌 대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 2년이내 일시상환</li> <li>· 입주자 : 1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li> </ul>	- 주택의 사업승인 후에도 입주자 앞으로 대환되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출기간 연장가능  -[ ]는 입주자 전환시 금리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충 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 되, 미증빙시 연 2.8%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 금리는 2021년 9월 21일부터 1년간 착공물량에 한하여 1.5%p 인하( 21.11.22. 이후 납부하는 이자부터 적용)
▪ 다가구주택자금	40,000 (가구당 5,000)	3.8	1 일시상환	-대출금의 20%이상(3년차 연장시부 터 30%) 상환시 당초 상환기일로 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 로 연장가능 * 3년차 연장시 금리 1.5%p 가산 (금리가산은 금리 2.0%로 취급된 분에 한함)  - 금리는 2021년 9월 21일부터 1년간 착공물량에 한하여 1.5%p 인하( 21.11.22. 이후 납부하는 이자부터 적용)
▪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1.5	3년거치 17년상환	-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하되 특별재해지역은 최대 8,320만원까지 가능 -재해주택복구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제외)은 전용면적 100㎡까지 용자
▪ 주택 내진보강 지원	단독주택 호당 4,000  공동주택 호당 2,000	1.8	2년거치 8년상환	- 내진보강을 위해 허가권자에게 건축·대수선 허가(또는 신고)하는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함
▪ 후분양주택자금 · 전용면적 60㎡이하  · 60㎡초과~ 85㎡ 이하	수도권 9,000 광역시 8,500 기타 8,000  수도권 11,000 광역시 10,500 기타 10,000	3.1 [민간 사업자의 경우 3.6, 디딤돌 대출금리]  3.3 [민간 사업자의 경우 3.8, 디딤돌 대출금리]	· 사업자 : 3년이내 일시상환  · 입주자 : 1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 · 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 미증빙시 연 2.8%
▪ 준주택지원 · 오피스텔  · 고시원	120/㎡  40/㎡	5.0  5.0	3년내 일시상환  3년내 일시상환	-오피스텔 : 실당 바닥면적 12~50㎡ (최대 6,000만원)  -고시원 : 실당 바닥면적 7~20㎡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 금리는 2021년 9월 21일부터 1년간 오피스텔 착공물량에 한하여 1.5%p 인하('21.11.22. 이후 납부하는 이자부터 적용)
▪ 주택성능보강	4,000/호	1.2	5년거치 10년상환	-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공동주택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세대별 평균 전용 면적으로 계산함 - (조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가연성 외장재 사용 2. 스프링클러 미설치 3.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주택구입용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일반: 25,000 신혼: 27,000 2자녀:31,000	2.00~2.75	-0년 (1년) 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초,신혼,2자녀이상가구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4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대상주택 : 85㎡ 이하 5억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소유자 (생애최초 구입자는 연 7천만원) - DTI 60%이내→LTV 최대 70% -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가능 *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주택 구입자·신혼가구 0.2% 금리우대(한부모가구 0.5%p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금리우대(중복적용 가능)(최저금리 1.5%)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가입기간 1년(월12회납입)이상 0.1%p, 3년(36회) 이상 0.2%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시 0.1%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단, '22.12.31까지 한시 적용) * 신규분양주택가구 0.1%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단독세대주(1인가구) 요건 강화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 (주택가격) 5억원 이하→8억원 이하 - (대출한도) 2.5억원 이하→1.5억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60㎡이하 <만기·소득별 금리현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부부</th> <th colspan="4">만기별 금리(%)</th> </tr> <tr> <th>10</th> <th>15년</th> <th>20년</th> <th>30년</th> </tr> </thead> <tbody> <tr> <td>연소득 2천만원이하</td> <td>2.00</td> <td>2.10</td> <td>2.20</td> <td>2.25</td> </tr> <tr> <td>2~4천만원이하</td> <td>2.25</td> <td>2.35</td> <td>2.45</td> <td>2.50</td> </tr> <tr> <td>4~6천만*원이하</td> <td>2.50</td> <td>2.60</td> <td>2.70</td> <td>2.75</td> </tr> </tbody> </table> * 생애최초 구입자 : 4~7천만원 이하	부부	만기별 금리(%)				10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00	2.10	2.20	2.25	2~4천만원이하	2.25	2.35	2.45	2.50	4~6천만*원이하	2.50	2.60	2.70	2.75
부부	만기별 금리(%)																											
	10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00	2.10	2.20	2.25																								
2~4천만원이하	2.25	2.35	2.45	2.50																								
4~6천만*원이하	2.50	2.60	2.70	2.75																								
▪ 신혼부부전용 디딤돌 구입 대출	27,000 2자녀:31,000	1.70~2.45	0년 (1년) 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4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대상주택 : 85㎡ 이하 5억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소유자 - DTI 60%이내→LTV 최대 70% -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가능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가입기간 1년(월12회납입)이상 0.1%p, 3년(36회)이상 0.2%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시 0.1%p 우대하되,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단, '22.12.31까지 한시 적용) * 신규분양주택가구 0.1%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금리우대(중복적용 가능)(최저금리 1.2%) <만기·소득별 금리현황>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부부	만기별 금리(%)			
					10	15년	20년	30년
				연소득2 천만원이하	1.70	1.80	1.90	1.95
				2~4 천만원이하	1.95	2.05	2.15	2.20
				4~7 천만원이하	2.20	2.30	2.40	2.45
▪ 공유형 모기지	20,000	1.5 (수익형)  · 5 : 1 · 5년이후 : 2 (손익형)	· 수익형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 년상환  · 손익형 : 20년 일시 상환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 주택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 택 세대주에 구입자금 용자  * 대상주택 : 85㎡ 이하 6억이하 공동주택(아파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초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 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4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 기지	40,000	1.3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상환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세대 원 포함)  - 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 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 대출금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단,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한도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억원 대출 (정산비율은 선형 보간법에 따라 산 정하여 적용)  * 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p단위로 적용				
▪ 오피스텔 구입자금	7,000	2.8	2년이내 일시상환 (9회 연장 가능)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 하인 무주택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 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4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 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이하, 1.5 억원이하 주거용 (LTV 50%한도)  *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장애인·다문화가구 0.2% 금리우대  * 연소득(부부합산) 2~4천만원이하는 0.3% 금리우대, 2천만원이하는 0.5%금리우대				
▪ 주거안정 구입자금	20,000	2.8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초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 3.0	-5년거치 25년상환	*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4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LTV 70%이상 주택 또는 1년이상 임차중인 주택 구입시 용자 * 대상주택 : 85㎡ 이하 6억이하 -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장애인·다문화가구 0.2% 금리우대																																				
▪ 주택구입자금	경락주 주택가격의 80% 범위내	10년간 2.3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상환	- 분양자금 일반입주자 앞 이율 적용(2.8%)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주택전세용자)																																								
▪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수도권 : 12,000 광역시 : 8,000 기타 : 6,000 (보호대상아동 2명) 수도권 : 13,500 광역시 : 10,000 기타 : 8,500 *보호대상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아동수에 따라 2,000만 원씩 대출한도 상향	무이자	대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12월 20일 (1년단위 연장)	-만20세이하인 경우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균복무기간 불산입)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도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 (만20세를 초과한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6회까지 계약 연장 가능)																																				
▪ 전세임대 자금	수도권 : 12,000 광역시 : 8,000 기타 : 6,000	2.0 (보증금규 모별 지원금리 차등)	대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12월 20일 (1년단위 연장 가능)	-쪽방, 비닐하우스 포함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20백만원, 기타지역 80백만원(단,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수도권·광역시 1.5억원, 기타 1.2억원) - 청년전세임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수도권</th> <th>광역시</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1인</td> <td>1.2억</td> <td>0.95억</td> <td>0.85억</td> </tr> <tr> <td>2인, 기숙사형</td> <td>1.5억</td> <td>1.2억</td> <td>1억</td> </tr> <tr> <td>3인 이상</td> <td>2.0억</td> <td>1.5억</td> <td>1.2억</td> </tr> </tbody> </table> - 신혼부부 전세임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수도권</th> <th>광역시</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신혼부부 I</td> <td>1.35억</td> <td>1.0억</td> <td>0.85억</td> </tr> <tr> <td>신혼부부 II</td> <td>2.4억</td> <td>1.6억</td> <td>1.3억</td> </tr> </tbody> </table> - 다자녀 전세임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수도권</th> <th>광역시</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다자녀</td> <td>1.35억</td> <td>1.0억</td> <td>0.85억</td> </tr> </tbody> </table>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1인	1.2억	0.95억	0.85억	2인, 기숙사형	1.5억	1.2억	1억	3인 이상	2.0억	1.5억	1.2억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신혼부부 I	1.35억	1.0억	0.85억	신혼부부 II	2.4억	1.6억	1.3억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다자녀	1.35억	1.0억	0.85억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1인	1.2억	0.95억	0.85억																																					
2인, 기숙사형	1.5억	1.2억	1억																																					
3인 이상	2.0억	1.5억	1.2억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신혼부부 I	1.35억	1.0억	0.85억																																					
신혼부부 II	2.4억	1.6억	1.3억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다자녀	1.35억	1.0억	0.85억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li> <li>- 지원금리 차등적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4천만원 이하</td> <td>~6천만원 이하</td> <td>6천만원 초과</td> </tr> <tr> <td>연 1.0%</td> <td>연 1.5%</td> <td>연 2%</td> </tr> </table> </li> <li>-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li> <li>·청년 1순위, 청년 2·3순위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장애인·장애인 가구의 자녀 0.5%p 금리우대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li> <li>·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li> <li>·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자 및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은 만 20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군복무기간 불산입) 50% 감면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li> </ul> </li> <li>- 특별재난지역 전세임대 특별공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li> <li>·지역별 용자한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용자한도까지 지원 가능</li> <li>·보증금규모별 지원금리도 최초 1회 (2년)에 한해 50% 인하, 2년초과 6년까지 기본금리 적용</li> </ul> </li> </ul>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연 1.0%	연 1.5%	연 2%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연 1.0%	연 1.5%	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버팀목 전세자금</li> </ul>	수도권 12,000 지방 8,000  (2자녀이상) 수도권 22,000 지방 18,000	1.8~2.4 (1.0~1.2)	2년이내 일시상환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유자녀가정)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합산 총소득 50백만원 이하(단, 신혼부부,2자녀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는 60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li> <li>*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li> <li>-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2자녀 이상 80%)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 등 결과에 따라 결정</li> <li>* 대상주택 : 85㎡ 이하, 전세보증금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만기·보증금별 금리현황&gt;</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보증금</td> <td>5천만원</td> <td>5천만~</td> <td>1억</td> </tr> </table>	보증금	5천만원	5천만~	1억		
보증금	5천만원	5천만~	1억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소득	이하	1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8(1.0)	1.9(1.0)	2.0(1.0)												
				2천~ 4천만원	2.0(1.0)	2.1(1.1)	2.2(1.2)												
				4천~ 5천만원	2.2	2.3	2.4												
				<p>* ( )은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적용되는 우대금리</p> <p>*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p 금리 우대하되, 위 1%p 포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p> <p>*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금리우대(중복적용 가능)</p> <p>*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amp;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중복우대 불가)(최저금리 1.0%)</p> <p>*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시 0.1%p 우대하되,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단, '22.12.31 까지 한시 적용)</p>															
- 청년 전용 전세대출	버팀목 5,000 만원 한도(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1.8	24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또는 분할상환(신규도입)	<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 단독세대주 대상(무주택세대주)</p> <p>-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 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지원</p> <p>*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p> <p>* 대상주택 : 60㎡ 이하(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세보증금 7천만원 이하</p> <p>▪ 25세미만 단독세대주 청년</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2">보증금</th> <th>5천만원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연소득</td> <td>2천만원 이하</td> <td>1.2</td> </tr> <tr> <td></td> <td>2천~4천만원</td> <td>1.5</td> </tr> <tr> <td></td> <td>4천~5천만원</td> <td>1.8</td> </tr> </tbody> </table>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2		2천~4천만원	1.5		4천~5천만원	1.8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2																	
	2천~4천만원	1.5																	
	4천~5천만원	1.8																	
	7,000 만원 한도(그외 34세이하 청년)	1.5~2.1	(유자녀가정)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가능)	<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만19세 이상 34세 이하(2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의 청년 대상(무주택세대주)</p>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 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7천만원 지원</li> <li>*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li> <li>* 대상주택 : 85㎡ 이하(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 청년(만34세 이하)</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2">보증금</th> <th rowspan="2">1억원 이하</th> </tr> <tr> <th colspan="2">연소득</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2천만원 이하</td> <td>1.5</td> </tr> <tr> <td colspan="2">2천~4천만원</td> <td>1.8</td> </tr> <tr> <td colspan="2">4천~5천만원</td> <td>2.1</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시 0.1%p 우대하되,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단, '22.12.31까지 한시 적용)</li> <li>*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에 0.2% 우대(향후 조건 충족 시 적용)</li> </ul>	보증금		1억원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5	2천~4천만원		1.8	4천~5천만원		2.1
보증금		1억원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5																
2천~4천만원		1.8																
4천~5천만원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li> </ul>	수도권 20,000, 지방 16,000	1.2~2.1	2년이내 일시상환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유자녀가정)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합산 총소득 60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li> <li>*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li> <li>-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 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li> <li>* 대상주택 : 85㎡ 이하, 전세보증금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만기·보증금별 금리현황&gt;</p>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보증금 연소득	5천원 이하	5천만 ~ 1억원	1억원 ~ 15억원	15억 원초과
				연소득 2천만 원이하	1.2	1.3	1.4	1.5
				2~4천 만원이 하	1.5	1.6	1.7	1.8
				4~6천 만원이 하	1.8	1.9	2.0	2.1
				<p>*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시 0.1%p 우대하되,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단, '22.12.31까지 한시 적용)</p> <p>*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금리우대(중복적용 가능)(최저 금리 1.0%)</p>				
▪ 주거안정 월세자금	960 (매월 40만원씩 2년간)	1.5(일반형), 1.0(우대형)	2년이내 일시상환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2년 단위 갱신 시 상환비율 하향 (25→10%, 우대형 한정)	<p>- 무주택자 대상 일반형, 우대형으로 구분하여 지원</p> <p>-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p> <p>- (우대형) 아래 가~라. 해당자가 가. 무소득 취업준비생 나. 취업 5년내 사회초년생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이하, 취업 5년 이내) 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라. 주거급여,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가와 나는 만35세 이하인 자</p> <p>- 일반형 및 우대형의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p> <p>- 성실 납부자는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 0.2%p 우대</p>				
▪ 퇴거자 전세자금	5,000	3.0	2년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p>-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p> <p>- 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의 연 1.0% 적용(지자체장 추천시)</p>				
▪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 보증금 용자지원	10,000	1.2	2년 만기 일시상환 (1회 2년 연장가능,	<p>- 중소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진공, 신·기보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p>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2회차연장 (4년 경과후) 시부터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적용	최대 10년 대출가능)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맞벌이 50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 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 연 1.2%(고정금리), 1억원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 3,500  월세금: 1,200 (월 50이내)	보증금: 1.3%  월세금: 1.0%(20만 원초과), 0%(20만원 한도)	2년 만기 일시상환 (1회 2년 연장가능, 최대 10년 대출가능)	만 19세~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 청년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 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 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 노후 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지원	5,000	1.8	2년 만기 일시상환 (1회 2년 연장가능, 최대 10년 대출가능)	노후 고시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수도권 18,000 지방 12,000	1.2~2.4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 만기일 이내 운용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기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로서 '20.8.1.~'21.7.31. 갱신청구권 기행사 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 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지방 2.5억원 이하) 주택 - 추가대출 시 신청자격에 따른 버팀목 상품별 금리 및 심사기준 적용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국민임대주택용자)				
▪ 국민임대주택자금  · 전용면적 35㎡이하  · 전용면적 35㎡초과~ 45㎡이하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b>4,255</b>  <b>5,866</b>  <b>8,175</b>	1.8	30년 거치 15년 상환	-지자체(지방공사 포함)·주택공사에 서 재정지원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 는 주택(임대기간 30년) -호당용자 한도액은 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 -건축물 1등급 이상 예비 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 조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b>○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행복주택용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주택자금</li> <li>· 전용면적 60㎡이하</li> </ul>	5,521  (LH)6,193	1.8	30년 거치 15년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형(전용면적 30㎡이하) 주택사업 추진 또는 지자체(지방공사포함)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연 1.0% 적용</li> <li>-건축물 1등급 이상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 조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li> </ul>
<b>○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통합공공임대용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공공임대주택자금</li> <li>· 전용면적 20㎡이하</li> <li>· 전용면적 20㎡초과~30㎡이하</li> <li>· 전용면적 30㎡초과~40㎡이하</li> <li>· 전용면적 40㎡초과~50㎡이하</li> <li>·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li> <li>· 전용면적 60㎡초과~70㎡이하</li> <li>· 전용면적 70㎡초과~80㎡이하</li> <li>· 전용면적 80㎡초과~85㎡이하</li> </ul>	3,011 4,353 6,021 7,690 9,322 7,883 8,759 9,926	1.8	30년 거치 15년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당용자 한도액은 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li> <li>-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형(전용면적30㎡이하) 주택사업 추진 또는 지자체(지방공사포함)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연 1.0% 적용</li> <li>-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 조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li> </ul>
<b>○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공공임대용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자금</li> <li>· 전용면적 60㎡이하</li> <li>·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li> </ul> <p>(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는 60㎡이하만 해당)</p>	5,500  7,500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는	2.3 [디딤돌 대출금리]  2.8 [디딤돌 대출금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10년(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경우 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 동안 거치후 20년 상환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는 10년(10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사업자 등이 건설하는 주택(임대기간 5년 이상)</li> <li>-건설 중(준공前)인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주택</li> <li>-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받는 경우 대환일로부터 10년간 연 2.3% 적용</li> <li>-[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li> <li>·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li> </ul>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매입가격의 30%)  (세일앤리스 백 리츠는 호당 10,000만원)	리츠, 세일앤리 스백 리츠는 1.0%)	가능) 후 일시상환)  (세일앤리스백 리츠는 5년 후 일시상환)	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 하되, 미증빙시 연 2.8%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로서 지자체(지방공사 포함)·LH공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 하는 주택은 연 2.3% 적용 · 호당한도 7,500만원 - 또는 공공임대리츠가 건축물 에 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 이상을 받 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 조정(제 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는 20% 상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매입 대상 주택은 서울 5억원 이하, 인 천·경기 4억원 이하, 그 외 광역시 3억원 이하, 그 외 지역 2억원 이하
▪ 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다세대, 연립  -전용면적 60㎡이하	5,000	3 [디딤돌 대출금리]	10년 거치 20년 상환	-기존 임대주택건설기준 준용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 · 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 미증빙시 연 2.8%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5,000	4 [디딤돌 대출금리]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 14㎡이상~30㎡미만	㎡당 80	4.0  [디딤돌 대출금리]	10년 거치 20년 상환	-용자 한도 : 최저 1,120만원(14㎡), 최고 5,000만원(50㎡)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 충족시, 디딤돌대출금리와 연동 하되, 미증빙시 연 2.8% 단, 원룸 대출기간 20년의 임대하 는 주택을 매각(분양)하는 경우에 는 잔여대출조건을 유지하여 대 환처리 (금리는 대환금리 연 2.8% 적용)
· 30㎡이상~50㎡이하	㎡당 100			
▪ LH공사 경락자금 · 전용면적 60㎡이하	경락가격 범위내	2.3 [디딤돌 대출금리]	10년(의무임대기간 이 10년인경우 15년) 이내에서	-입주자격 :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경락가격 범위내	2.8 [디딤돌 대출금리]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	-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충 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 되, 미증빙시 연 2.8%
· 신축다세대 매입임대 · 신축다세대	호당 8,400	2.0	10년 거치 20년 상환	- 민간이 신축하는 60㎡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형 임대로 공급하고자 하는자 (공공주택법 적용 주택에 한함)
· 매입임대 주택자금	7,500 (수도권 1.5억원)	4.0	5년 이내 일시상환	-매입대상 : 신규분양, 미분양 및 기존 아파트 - 신규분양(14.2.26.이후 분양) 주택 ·대출한도 : 6천만원(수도권 1억원)  -공공기관은 연 3.0% 적용 · 임대종료후 분양전환된 주택은 제외 -임대기간동안 1년단위로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시 매년 당초 대출금 원금의 4%이상 의무상환 ※ 신규대출의 경우 5년간의 의무 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
·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 전용면적 60㎡이하 · 60㎡초과~ 85㎡ 이하	7,500 (수도권 1.5억원)	2.7	10년이내 일시상환	-매입대상 : 신규분양, 미분양 및 기 존주택포함 - 신규분양(14.2.26.이후 분양) 주택 ·대출한도 : 6천만원(수도권 1억원)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다가구매입임대용자)				
· 다가구매입임대	시행자별 호당 지원단가의 45%~50% 수준	1.0	20년거치 20년상환	-매입대상: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 (다가구) 서울 8,900만원, 인천 6,400만원, 경기 6,900만원, 대구 5,750만원, 제주 5,500만원, LH 6,600만원 ·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서울 12,500만원, 인천 6,250만원,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경기 7,900만원, 부산 6,000만원, 대구 6,000만원, 광주 5,250만원, 대전 6,000만원, 제주 5,750만원, 기타 5,000만원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서울 22,700만원, 인천 10,750만원, 경기 13,250만원, 부산 11,150만원, 대구 12,000만원, 광주 10,000만원, 대전 10,850만원, 제주 10,500만원, 기타 8,500만원  · (청년 매입임대) 서울 12,650만원, 인천 5,750만원, 경기 6,500만원, 부산 5,600만원, 대구 6,000만원, 광주 4,750만원, 대전 5,400만원, 제주 5,200만원, 기타 5,000만원  · (기숙사형 매입임대) 7,500만원 · (청년 리모델링 I) 4,750만원 · (청년 리모델링 II) 10,000만원 · (일반 리모델링) 10,000만원 · (고령자 리모델링) 7,500만원 · (다자녀 매입임대) 8,500만원 · (다자녀 리모델링) 11,500만원 · (커뮤니티시설) 20,000만원 · (공공전세) 서울 29,588만원, 인천 19,350만원, 경기 19,350만원, 기타 15,750만원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민간임대주택 용자)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 전용면적 45㎡이하 -공공지원(주거, 준주거지역 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 포함), 사회주택 -30세대이상 장기일반 -29세대이하 장기일반 - 준주택	5,000  5,000 5,000 5,000	2.0  2.2 2.7 3.2	14년(공공지원·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만기 일시상환 12~20년(사회주택) 만기 일시상환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 별법에 따라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호당 용자 한도액 및 금리는 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 -대출기한 연장시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준주택 제외)은 당초 대출원금 의 5% 이상 상환, 그 외는 10% 이상 상환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분양전환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0.1%p, 최대 1.0%p까지 인하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45㎡초과~60㎡이하</li> <li>- 공공지원(주거,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 포함), 사회주택</li> <li>- 30세대이상 장기일반</li> <li>- 29세대이하 장기일반</li> <li>- 준주택</li> </ul>	<p>8,000</p> <p>8,000</p> <p>7,000</p> <p>7,000</p>	<p>2.3</p> <p>2.5</p> <p>3.0</p> <p>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li> <li>※ 로드맵 발표(17.11.29) 이전에 이미 부지가 확보(민간제안사업 기투위, LH·HUG 택지공모 공고, 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회의결 기준)된 사업은 종전 용자한도 및 이율 적용</li> <li>- 도심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제외)을 대상으로 용자한도를 상향(호당 0.5~1억 → 0.7~1.2억, 규모별 각 2천만원 증)</li> <li>※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사업장 대상,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0.2%p 인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li> <li>- 공공지원(주거,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 포함), 사회주택</li> <li>- 30세대이상 장기일반</li> <li>- 29세대이하 장기일반</li> <li>- 준주택</li> </ul>	<p>10,000</p> <p>10,000</p> <p>9,000</p> <p>9,000</p>	<p>2.8</p> <p>3.0</p> <p>3.5</p> <p>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다가구)</li> <li>(단지형 단독주택)</li> </ul>	<p>50,000 (가구당 6,000)</p> <p>6,000</p>	<p>3.0 (2.0)</p>	<p>14년(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만기 일시상환</p> <p>8~20년(사회주택) 만기일시상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및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li> <li>- ( )는 사회주택 적용 금리</li> <li>- 대출기한 연장시 당초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li> <li>※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li> <li>-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 조정(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li> <li>- 도심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제외)을 대상으로 용자한도를 상향(호당 0.5~1억 → 0.7~1.2억, 규모별 각 2천만원 증)</li> <li>※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사업장 대상,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0.2%p 인하</li> </ul>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전세형 준주택)	15,000	1.5	14년(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만기 일시상환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 별법에 따라 건설하는 주거용 오피 스텔  -대출기한 연장시 당초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 ※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비주거 리모델링주택)	7,000	1.8	14년(공공지원민간 임대) 만기일시상환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 별법에 따라 비주거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대출기한 연장시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준주택 제외)은 당초 대출원금 의 10% 이상 상환  ※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
▪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 전용면적 45㎡이하 -공공지원(주거,준주거지 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 택 포함), 사회주택 -장기일반 -준주택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공공지원(주거,준주거지 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 택 포함), 사회주택 -장기일반 -준주택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공공지원(주거,준주거지 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 택 포함), 사회주택 -장기일반 -준주택	5,000  5,000 5,000  8,000  8,000 7,000  10,000  10,000 9,000	2.0  2.2 3.2  2.3  2.5 3.5  2.8  3.0 4.0	10년(공공지원·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만기 일시상환 12~20년(사회주택) 만기 일시상환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 별법에 따라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호당 용자 한도액 및 금리는 주택규모별로 차등 적용 -대출기한 연장시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준주택 제외)은 당초 대출원금 의 5% 이상 상환, 그 외는 10% 이상 상환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분양전환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0.1%p, 최대 1.0%p까지 인하 ※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 ※ 로드맵 발표(17.11.29) 이전에 이미 부지가 확보(민간채안사업 기투위, LH·HUG 택지공모 공고, 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회의결 기준)된 사업은 종전 용자한도 및 이율 적용
▪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다가구)	50,000 (가구당 6,000)	3.0 (2.0)	10년(공공지원·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만기 일시상환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 법에 따라 매입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는 사회주택 적용 금리 -대출기한 연장시 당초 대출원금의 10%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8~20년(사회주택) 만기일시상환	이상 상환 ※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
○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용자)				
▪ 도시재생지원 용자	총사업비의 50% 단 리츠사업의 경우, 민간출자 비율 - 1% 미만 시 30% 이내 - 1%~3% 시 40% 이내 - 3% 이상 시 50% 이내	2.2 (변동금리) 단,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리츠(공공지분 51%이상)는 1.8%	13년 이내 일시상환 (단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은 최장 35년까지 지원)	-용자대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등 사업시행사
▪ 공간지원리츠 용자	총사업비의 50%	1.8 (변동금리)	13년 이내 일시상환	-용자대상: 도시재생사업, 정비사 업,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상 가 등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 운 영하는 리츠
▪ 도시재생씨앗 용자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 지원 용자)	총사업비의 70% (담보인정가액 이내) *임대료 인상률 제한시 최대 80% *임차자금은 임차보증금 의 90% *도시재생분 야와 관련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및 사 회적기업”인 경우 최대 80% *사업자가 투기 과열지구 내에 위치하거나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높은 경우 한도 40%까지 제한(두가지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 제한)	1.9 (변동금리, 우대최대 1.2%) 사업시행자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거나 사회적경제 주체인 경우 1.5%(우대 최대 1.2%)  * 2021.7.1. 이전 신청 사업의 경우 1.7%(변동 금리),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공공 기관 등 공 공이거나 사회적경제 주체인 경우 1.5%	7년 만기 일시상환 (원리금(원금) 분할 상환 가능)  * 용자기간 1회 연장 가능 (총 12년) * 지자체 등 2회 연장 가능 (총 17년)	-용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에서 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및 도시재 생 인정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 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또는 상가소유자, 청년창업자 등 개인
▪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자	구역별 총사업비의 50% 이내 (공적임대주택)	1.5 (변동금리) 단, 빈집*을 활용하거나	5년 만기일시상환 (준공후 6개월 이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사 대상 -초기사업비 지원 :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공급시 한도 70%, 공공시행(공동시행 포함)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한도 90% 상향)	공공 참여시 1.2% *사업구역 내 빈집이 10호 이상 또는 빈집의 대지면적이 전체 사업 면적의 20% 이상		지원, 총사업비의 5% 이내(한도 15억원) -본 사업비 지원 :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준공인가 시까지의 사업비 지원, 총사업비의 50%(既지원된 초기사업비 포함) 이내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본 사업비 한도 상향 : 연면적 또는 총 건설 예정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공공참여시 본 사업비 용자시기 및 한도 조정 : 공공이 시행(공동시행 포함)하는 사업으로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부터 용자
▪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자	구역별 총사업비의 50% 이내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한도 70% 상향, 공공시행(공동시행 포함)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한도 90% 상향))	1.5 (변동금리) 단, 빈집*을 활용하거나 공공 참여시 1.2% * 사업대상 주택에 빈집이 1호 이상 포함된 경우	5년 만기일시상환 (준공후 6개월 이내)  *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연장가능 (총 10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18.2.9.) 이후 적용 -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토지등소유자 또는 공동시행자) 대상 - 초기사업비 지원 ·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의 초기사업비 지원, 총사업비의 20% 이내 · 공공이 시행(공동시행 포함)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40%까지 지원 -본 사업비 지원 :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준공인가 시까지의 사업비 지원, 총사업비의 50%(既지원된 초기사업비 포함) 이내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한도 상향 : 연면적 또는 총 건설예정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70%(공공이 시행(공동시행 포함)하는 경우 90%) 까지 지원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용자기간 연장 : 연면적 또는 총 건설예정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직접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기간 연장
▪ 노후산단재생 용자 (복합개발)	총사업비의 50% 이내 (담보인정가액)	2.0 (변동금리)	13년 이내 일시상환	-용자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이내)			
▪ 노후산단재생 용자 (기반시설조성)	총사업비의 70% 이내 (담보인정가액 이내)	1.5 (변동금리)	10년이내 일시상환 (원리금(원금)분할 상환 가능)	-용자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
▪ 노후산단재생 용자 (리모델링)	총사업비의 70% 이내 (담보인정가액 이내)	1.5 (변동금리)	10년이내 일시상환 (원리금(원금)분할 상환 가능)	-용자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장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 업시행자 (다만, 산업단지 재생계획에 의한 반파·전파 공장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산단 내 이전·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공장건설비 지원)